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

정태창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서론

‘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정치적 전통 안에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자유주의가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 그중 하나는 존 로크, 아담 스미스, 토크빌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고전적’(classical) 자유주의로서 사유재산의 신성성, 각자의 운명에 대한 개인의 책임, 제한된 정부 등의 관념을 그 핵심으로 하며, 현대에는 하이에크(F. Hayek), 노직(R. Nozick) 등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이는 맥퍼슨(C. B. Macpherson)이 정식화한 바 있는 ‘소유적 개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²⁾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협소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로서 일찍이 밀(J. S. Mill), 홉하우스(L. T. Hobhouse) 등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롤즈(J. Rawls)의 정의론을 통해 가장 체계적이고 엄밀

1) 황경식,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자유와 소유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열린 자유주의를 위하여』, 철학과현실사, 2006, 22-26쪽 참조.

2) 맥퍼슨에 따르면 소유적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가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263-264쪽). 첫째, 개인은 타인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사회에 아무런 부채도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능력의 전적인 소유자이다. 둘째, 인간사회는 이러한 소유권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시장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사회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개인들 간의 교환관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데 있다. 소유적 개인주의의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가정들이기도 하다.

한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된다.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을 내세우는 롤즈의 자유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³⁾라는 관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자유방임형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사회의 기본구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동일한 자유 개념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있다. 롤즈가 정의의 제1원칙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자유들의 목록—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서, 고전적인 형태의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타인에 의한 강제의 결여”⁵⁾로서의 자유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롤즈는 자유로운 원자적 개인을 상정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⁶⁾ 그렇다면 롤즈는 실제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양자에게서 자유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명을 얻기 위해서는 롤즈가 정의의 제1원칙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롤즈가 그의 정의론을 통해 지향하는 자유의 상태가 정확히

3)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XV쪽. 이후 TJR로 약칭하여 본문에 쪽수를 표기한다.

4) J.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 Kelly(ed.),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36-138쪽.

5)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9쪽.

6) 예를 들어 공동체주의자인 샌들(M. Sandel)은 롤즈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롤즈가 상정하는] 철저히 독립적인 자아는 [……] 참여자의 이해관계는 물론 정체성 또한 좋던 나쁘던 관련될 수 있는 공적인 삶의 가능성을 배제하며, 공통의 목적과 목표가 보다 확장된 자아에 대한 이해를 고무할 가능성 또한 제거한다.”(M.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62쪽)

어떠한 것인지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롤즈의 정의론에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자유의 두 가지 개념, 즉 정의의 제1원칙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들과,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관념이 실현되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누리게 될 자유의 상태가 있음을 살펴보고, 후자가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스키너(Q. Skinner), 페티트(P. Pettit), 비롤리(M. Viroli)의 공화주의적 자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공화주의적 자유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을 포괄하면서 보완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계속되는 3절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에 이러한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음을 보일 것이다.

2.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이사야 벌린(I. Berlin)은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논문에서 타인에 의한 간섭과 방해의 부재라는 의미의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의미의 ‘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제시하고, 그 중 전자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 개념을 “자유로운 사람이란 그가 그의 힘과 재치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 자신의 의지로 무슨 일을 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다”⁷⁾라는 명제로 표현되는 홉스의 도덕 중립적인 자유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강제를 “내가 그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행동하였을 영역에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간섭하여 다르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⁸⁾으로 파악한다. 벌린에 따르면 강제는 그것

7) T. Hobbes, *Leviathan*, E. Curley(ed.),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4, 136쪽.

8) I.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Liberty*, H. Hardy(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69쪽.

이 인간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한에서는 악이며, 불간섭은 강제에 반대인 한에서는 그 자체로 선이다. 법에 의한 강제 또한 설사 정당하다 하더라도 자유와는 언제나 반대되는 것으로서,⁹⁾ 자유를 함당하게 제한함으로써만 바람직한 사회적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된다. 즉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개인 자유의 최소 영역, 즉 개인의 자연권 혹은 기본권이 존재하며, 법(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국가)은 오로지 이러한 최소 영역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별린의 소극적 자유 개념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¹⁰⁾ 반면에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만큼 자유롭고, 그렇지 못한 만큼 노예가 된다. 별린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자유에 대한 자코뱅과 벤담의 언급을 통해 예시한다. 자코뱅들이 “그 누구도 악을 행할 자유가 없다.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벤담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말인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악인과 백치들이 자유를 오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¹¹⁾ 도덕 중립적인 소극적 자유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이처럼 비합리적인 것과 부도덕한 것을 행하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좋은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목적론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해서만

9) “법이란 언제나 일종의 ‘족쇄’이다. 설령 법보다 더 무거운 사슬, 예컨대 혼돈 또는 자의적 독재의 사슬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위의 책, 170쪽) 별린에 따르면 “모든 법은 자유에 반대된다”라는 벤담의 언명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같은 책, 195쪽).

10)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간섭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나의 자유의 영역 또한 넓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고전적인 영국의 정치철학자들이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의미한 바이다.”(위의 책, 170쪽)

11) 위의 책, 194쪽.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공동체에의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벌린이 보기에 이는 폭정과 전제가 자신들의 억압을 정당화할 때 이용하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적극적 자유론은 완전한 사회 안에서의 자아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¹²⁾

벌린의 이러한 소극적 자유론에 대해 과연 자유를 그렇게 이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공화주의자인 스키너, 페티트, 비롤리 등은 소극적 자유도 적극적 자유도 아닌 제3의 자유인 공화주의적인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벌린에게 도전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에 반대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지배(domination) 또는 예속이다. 페티트는 B에 대한 A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A는 B가 내릴 수 있는 특정한 선택과 관련하여 2) 자의적으로 3) B를 간섭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¹³⁾ 이때 간섭 혹은 방해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간섭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지배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키너에 따르면 이러한 공화주의적인 지배 개념은 고대의 로마법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인자한 주인 하에 있으면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노예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따르면 자유롭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자유롭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타인의 권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예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언제나 주인의 너그러운 처분 안에서 그랬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느 때나 죽을 수도 있었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었다.”¹⁴⁾ 따라서 지배 혹은 예속 하

12) “모든 독재자, 고문 가해자, 깡패들이 자기 행위를 도덕적으로 또는 심지어 미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주장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그들을 위해 (또는 그들과 더불어) 해주어야 한다. 이때 그들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에서는 자기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책, 197쪽)

13) P. Pettit, “Liberty as Non-domination”,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52쪽.

에 있는 자는 타인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어도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게 된다. 이를 비롤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간섭이 작위(作爲) 또는 방해라면 예속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움츠러들도록 하는 개인 의지의 조건화(條件化)이다.”¹⁵⁾ 이러한 지배 혹은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는 분명 별린이 말하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소극적 자유)와는 구분되며, 이는 ‘간섭 없는 부자유(지배)가 가능하다’라는 공화주의적인 자유론의 논제로 요약될 수 있다.¹⁶⁾

공화주의적인 자유를 별린의 소극적 자유와 구분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후자가 법 자체도 하나의 간섭으로서 자유와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전자는 보편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법의 간섭을 자유의 필요조건으로 삼는다는데 있다. 이는 루소(J. Rousseau)의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는 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종속되어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나는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기 때문이다.”¹⁷⁾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의 지배는 시민 모두를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타인들의 자의적 의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유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법률을 통해서 간섭하는 경우, 이는 소극적 자유 개념에 따르면 간섭인 한에서는 악이지만 공화주의적인 자유 개념에 따르면 예속 관계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유의 실현이 된다. 이를 ‘간섭에 의한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공화주의적 자유론에서 말하는 법의 지배는 별린의 적

14) Q. Skinner,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41쪽.

15)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94쪽.

16) P. Pettit, “Republican Freedom: Three Axioms, Four Theorems”,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C. Laborde & J. Maynor(eds.), Malden/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8, 111-114쪽 참조.

17) J. Rousseau, *Des Lois*, in: *Oeuvres complètes*, vol. 3, B. Gagnebin & M. Raymond(eds.), Paris: Gallimard, 1964, 492쪽.

극적 자유에서의 ‘이성의 실현’과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전자는 단지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할 뿐이며 보편적인 척도로서의 이성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롤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지배와 예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그가 “법의 제재를 두려워함이 없이 언제라도 남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들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¹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보편적인 이성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는다.¹⁹⁾

지금까지 별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 그리고 이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화주의적 자유론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자유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개념만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도덕중립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어떤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어떤 간섭이 용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방향성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별린의 다음과 같은 언명이 잘 보여준다. “비록 [……]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해고하는 고용인의 자유, 노예를 파는 노예 소유주의 자유, 희생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고문자의 자유는—많은 경우에—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온전하고 품위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자유들은 박탈되거나 금지되어야 마땅할 지라도,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조금도 부인할 수 없다.”²⁰⁾ 별린의 이러한 주장은 이러한 “진정한 자유”들에 대한 간섭조차도 해악이라는—그것이 별린의 의도는 아니겠지만—잘못된 관념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개념은 간섭은 그

18) 모리치오 비롤리, 앞의 책, 92쪽.

19) “공화주의자는 자유를 위해 특정한 삶의 유형 또는 특정한 자아의 유형을 강조하지 않는다. 자유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종관계(예속)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모리치오 비롤리, 위의 책, 100쪽)

20) I. Berlin, 앞의 책, 48쪽.

자체로 악이고 불간섭은 선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만을 고수하면 정당한 간섭조차도 불가피하게 일종의 악으로 표상하게 되며, 또한 어떤 경우든 간섭하지 않는 것만이 선이라는 잘못된 지향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소극적 자유 개념은 사회 질서의 유지 등 다른 가치들이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경우에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를 수단적 자유라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수단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주로 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제적-수단적 자유라 부를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소극적 자유들 중에 최소한 몇 가지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본적 자유(권리)를 선별하는 원리로서 개인(혹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개입시키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 물음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시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17세기 이래 자유주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풍부한 생산성을 증명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포함하는 소유권을 기본권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절대적인 소유권이라는 관념이 전체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②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만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²¹⁾ ③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제한된 형태의 자유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사회 구성원

21)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이 갖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점은 보울스(S. Bowles)와 진티스(Gintis)의 다음과 같은 자유주의 비판에 잘 나타나 있다. “자유주의의 어휘 목록에는 물질적 착취상태를 표현하는 기본용어들이 결여되어 있다. [……] 자유주의의 어휘목록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빈약하다. 공동체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두 가지 특권적인 용어-가족과 국가-는 사회생활의 낱실을 이루는 동일시 형태 및 연대 형태의 풍부한 레퍼토리를 심히 결여하고 있다.”(S. Bowle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15-16쪽)

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의 상태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콩스탕(B. Constant)은 적어도 종교, 사상, 재산의 자유만은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²²⁾ 이러한 기본적 자유들의 보장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 없다.

예속으로부터 자유 개념에 기초해 있는 공화주의적 자유론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간섭받지 말아야 할 개인적 자유의 최소영역을 확보하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의 상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③의 해결). 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 상태에 반대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예속, 즉 자의적 지배이다. 페티트는 시민적 자유의 상태를 비지배(non-domination), 즉 지배의 부재 상태로 규정하고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귀중한 것으로 여겨져 온 비지배 상태는 고립에 의해 얻어지는 지배의 부재가 아니라 타인의 현존 하에서의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비지배는 自由民(liberté)의 시민적 역할과 연관된 상태로서,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自由(libertas)는 市民權(civitas)인 것이다.”²³⁾ 여기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와 구별되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또 하나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전자가 사회에 앞서 존재할 수 있는 원자적 개인의 권리라는 관념에서 시작하는 반면 후자는 이미 사회 내에서 공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지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관념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②의 해결). 마지막으로 공화주의적 자유론 하에서 재산은 시민들이 예속의 상태를 벗어나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재산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불평등은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①의 해결).²⁴⁾

22) B. Constant, *Principles of Politics Applicable to All Governments*, trans. D. O’Keeffe,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참조.

23) P. Pettit, “Liberty as Non-domination”,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66쪽.

공화주의적 자유론은 자의적 권력이 배제된 자유국가 내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의 상태라는 관념에 기초해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법의 지배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에 기초해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법은 자유와 반대되는 필요악으로 표상되는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론에서 법은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된다. 둘째는 공화주의자인 아렌트(H. Arendt)와 포콕(J. Pocock) 등이 강조한 바 있는 시민적 덕성으로서, 여기에는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민주주의적 덕목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의무 또한 포함된다. 공화주의적 자유론 하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예속의 철폐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시민들 사이의 합당한 한도 내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으로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예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²⁵⁾ 또한 근대의 권리 개념 또한 공화주의적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이 있다는 관념은 예속을 철폐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적 자유론과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다. 또한 법에 의해 규정된 정당한 권리라는 관념은 자의적 의지를 배제한 지배-공화주의적 자유론에서 거부하지 않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공화주의적 자유가 성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토크빌(A. Tocqueville)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권리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방종과 폭정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 권리의 빛을 등대 삼아 우리는 각자가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고, 굴종하지 않으면서도 복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강제력에 굴복하게 되면 그는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24)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도서출판 길, 2011, 38쪽 참조.

25) “공화주의적 평등은 단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평등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존엄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들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모리치오 비롤리, 앞의 책, 140쪽)

하지만 그가 타인에게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 명령자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²⁶⁾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개인이 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관념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들을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이 비록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공화주의적인 정식은 결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²⁷⁾

3. 롤즈 정의론에서의 자유의 개념

롤즈는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둘러싼 논쟁에는 가치관들 사이의 해소하기 어려운 충돌이 있다고 보고 개입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적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나는 자유를 헌법상의 제한이나 법적인 제한과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자유란 제도상의 어떤 구조를 의미하며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들의 어떤 체계라 할 수 있다.

26) A.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Trans. G. Lawrence, New York: Harper & Row, 1969, 239쪽.

27) 롤즈 자신은 공화주의적 자유론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공화주의를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전적 공화주의란 비정치적 삶(근대인의 자유)의 자유들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자유들의 안전성은 입헌 정체를 유지하는 필요한 정치적 덕들을 갖춘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J.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 Kelly(ed.),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44쪽) 롤즈에 따르면 이렇게 이해된 고전적 공화주의와 콩스당과 벌린에 의해 주장된 자유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고전적 공화주의가 포괄적 교섭과 상관 없는 한에서 그것은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 자유롭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한 간섭으로부터도 보호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TJR, 177쪽)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앞서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 자유의 개념, 즉 법적·수단적 자유의 개념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 롤즈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미 제시한 바 있는 자유 자체와 자유의 가치의 구분을 받아들인다. “빈곤이나 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이 때로는 자유의 특유한 제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제1원칙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개인에 대해 갖는 가치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 자유는 평등한 시민이 갖는 자유의 완전한 체계에 의해 표현되는 반면, 개인과 단체에 있어서의 자유의 가치는 그 체계가 정해주는 형태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다.”(TJR, 179쪽) 이러한 구분은 하이에크가 제시하는 자유 개념에 동일한 형태로 내포되어 있다.²⁸⁾ 물론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수혜자의 보다 작은 자유의 가치를 보상하기 때문에 롤즈와 하이에크가 자유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양자의 차이는 자유의 개념에 있다가보다는 차등의 원칙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롤즈가 정의의 제1원칙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적 자유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자유방임적인 계약의 자유가 롤즈의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점

28) “자유는 원래 의미와 힘으로서의 자유와의 혼동은 자연히 자유를 부(富)와 동일시하게 만들며, 또 ‘자유’라는 말이 갖는 호소력을 부의 재분배 요구를 지지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유와 부는 모두가 바라는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둘 모두가 필요할지라도, 이 둘은 여전히 서로 다르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어서 나 자신의 선택을 그대로 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크지 작은지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7쪽)

(TJR, 54쪽)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유란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조건들을 덧붙인다면 참이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화주의적인 자유 개념은 소극적 자유나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양자를 포괄하면서 보다 확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핵심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이 양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롤즈의 정의론이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을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에 나타난 방식으로 포괄하고 확장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공화주의적 자유론에서 말하는 예측, 즉 자의적 지배의 부재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은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fairness)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 롤즈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공정의 문제가 일어날 경우는 서로에 대해 행세할 어떤 권위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공동의 행위에 가담할 때, 그리고 그들 간에 그 행위를 규정하고 그 이익과 부담에 있어서의 각각의 몫을 정해 줄 규칙들을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이다. 당사자들이 어떤 규율 체계에 참여함에 있어 그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합당하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요구를 해서 이득을 보거나 그 요구에 굴복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아무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규율 체계는 당사자들에게 공정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 서로에 대해 행세할 권위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의 원칙들에 대한 상호 인정 가능성이라는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공정성의 개념은 정의의 기본이 된다.”²⁹⁾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세할 권위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자의적 의지에 의한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오직 합당한 요구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즈는 공정성의 개념을 ‘공정한 경기’,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등의 용례에서 추출해내는데,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에 공통

29) J. Rawls, “Justice as Fairness”, *John Rawls Collected Papers*, S. Freeman(ed.),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59쪽.

되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규율들—즉 법—만이 지배할 뿐 어느 누구도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어 있지 않는 점이다. 롤즈가 말하는 공정성은 ‘특수의지’와 양립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가 관철되는 순간 다른 하나가 파괴된다. 이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 하에 있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는 단순히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예속으로부터의 자유임을 알 수 있다.

롤즈에게 공정성은 규율체계의 속성이며,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개인의 덕목은 합당성(reasonableness)이다. 롤즈에 따르면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여, 협력을 공정한 조건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꺼이 준수할 태도를 갖는”³⁰⁾ 개인은 합당성의 덕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롤즈에 의하면 합당한 것은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개념의 한 요소로서, 우리가 평등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의 공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그들과의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기꺼이 제시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합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³¹⁾ 이러한 합당성을 갖춘 시민이란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남에게 예속되는 것도 원치 않고 또한 남들을 예속시켜 사적(私的)으로 지배하려는(또는 주인처럼 지배하려는) 야심도 없는 그런 시민들”³²⁾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보편의지로서의 법의 지배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합당성을 갖춘 시민들이 구성하는 사회가 바로 세대와 세대에 걸친 협동의 공정한 체계로서의 사회로서, 이는 롤즈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근본적인 구성개념이자 민주적 사회의 공적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다.³³⁾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라는

30)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49쪽.

31) 위의 책, 53쪽.

32) 모리치오 비롤리, 앞의 책, 36쪽.

33) 앞의 책, 15쪽.

관념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³⁴⁾ 첫째, 공정한 협동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간주하는 공인된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협동의 공정한 조건이란 각 참가자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서, 협동의 공정한 관계는 상호성(reciprocity)을 함축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협동의 개념은 각 참여자의 합리적 이익 또는 선의 개념을 요구한다.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이란 위의 첫째 조건에서 말하는 ‘공인된 규칙과 절차’를 산출하는 가장 상위의 원리로서,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관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롤즈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사회란 1)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고 있고, 2)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사회를 말한다(TJR, 4쪽). 그렇다면 공정한 협동이냐는 관념과 질서정연함이라는 관념이 동시에 실현되어 있는 사회 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누리게 될 자유의 상태란 어떠한 것일까? 이는 바로 공정성이 완전하게 실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누리게 될 자유로서, 여기서 시민들은 오직 정의의 두 원칙과 그로부터 산출되어 나오는 공인된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만 지배될 뿐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요구, 즉 자의적 의지에서 나온 요구를 할 수 없다. 비록 롤즈가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롤즈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누리게 될 자유는 공화주의적 자유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공정성의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화주의적 자유론과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적 자유론의 핵심 관념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인도하고 있는 근본 물음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리야 할 자유의 상태는 무엇인가’이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34) 위의 책, 16쪽.

사회 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누리게 될 자유의 상태를 제시한다. ‘시민들이 시민으로서 누리야 할 최소한의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최소주의적인 물음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위의 근본물음에 부속된 것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관념 혹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관념은 이미 최소주의적 관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위의 근본물음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공화주의적 자유론과 합류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롤즈가 자유의 일차적인 담지자를 항상 시민으로 상정한다는 데 있다. 롤즈는 고전적 자유주의처럼 사회에 앞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원자적 개인이라는 관념에서 시작하지 않으며, 항상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인을 자유의 최종적인 담지자로 상정한다. 롤즈는 무역사적 성격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조차도 가장(familyhead)으로 상정함으로써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하고 있다(TJR, 126쪽). 따라서 롤즈가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를 상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샌델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³⁵⁾

둘째로 롤즈 정의론에서 법의 지배는 간섭은 악이고 불간섭은 선이라는 소극적 자유의 잘못된 관념을 담고 있지 않으며, 공정한 규율체계—즉 법—을 통해서만 시민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공화주의적인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간섭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생각과 양립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R. Nozick)이 지적하듯이 차등의 원리는 “특별히 강한 종류의 정형적 종국 상태적 원리”³⁶⁾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관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³⁷⁾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즈가 보기에 문제는 법 제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데

35) M. Sandel, 앞의 책 참조.

36)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Inc., 1974, 209쪽.

37) 위의 책, 163쪽.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체계가 자유의 가치를 올바로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입헌적인 정부가 갖는 주요 결점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데 실패해왔다는 점이다. [……] 정치적 평등과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재산과 부의 분배상의 격차가 일반적으로 법적 체계에 의해 허용되어왔다. 공공 자원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쓰이지 않았다.”(TJR, 198-199쪽) 롤즈의 이러한 언명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롤즈가 재산은 개인이 자신의 취향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많을수록 좋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재산관을 거부하고 있으며, 재산은 시민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공화주의적 재산관에 가까운 입장을 갖는다는 점이다. 롤즈가 보기에 재산의 과도한 축적은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다. “경제적·사회적 체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유리한 역사적 조건 아래 존재해온 어떠한 정치적 평등도 곧 해치게 된다.”(TJR, 199쪽) 차등의 원칙의 도입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 사이의 과도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정의의 제1원칙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게 되며, 차등의 원칙은 시민들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합당한 한도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이러한 불평등에 의해 상실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구조는 최소 수혜자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재화를 극대화시켜서 최소 수혜자 계층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정의의 중심 목표의 하나를 규정한다.”³⁸⁾

롤즈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가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본적 자유들 중에서 정치적 자유에 일종의 우

38)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326쪽.

선권을 부여하며, 다른 모든 기본적 자유들과는 달리 평등한 정치적 자유는 반드시 자유의 ‘공정한 가치’(fair value)를 보장받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때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보장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자유의 가치는 그들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공적 직위를 차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대체적으로 평등해야만 하거나, 또는 적어도 충분히 평등해야만 한다.”³⁹⁾ 이는 자유가 “모종의 독재 또는 어떤 정도가 되었던 자치의 부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⁴⁰⁾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반대되며,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화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시민적 덕성의 논의와 연결된다. 롤즈는 여기서 단지 수단적인 관점에서만 평등한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르면 “평등한 정치적 자유가 그 공정한 가치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시민 생활의 도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마련”이며, 더 나아가 “평등한 정치적 자유가 그 공정한 가치를 지니는 자치의 결과는 시민의 자존감을 드높이고 정치적 자신감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는 “그 자체로 즐길만한 행위로서 사회에 대한 관점을 보다 넓혀주고 시민의 지적·도덕적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TJR, 205-206쪽).

더 나아가 롤즈는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민적 덕목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고 있다. “안정적인 입헌 체제의 세 번째 요구 조건은 그 기본구조가 정치적 삶의 협동적인 덕목들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당성, 공정성의 감각, 타협의 정신 그리고 타인과 적절한 중간 지점을 기꺼이 찾으려는 태도가 속한다. 이러한 덕들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하여 모두가 공정한 것으로서 공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태도 혹은 욕망을 산출한다.”⁴¹⁾ 롤즈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시

39) 위의 책, 327쪽.

40) I. Berlin, 앞의 책, 176쪽.

41) J.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 Kelly(ed.),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16쪽.

민적 덕목들은 개인의 자질로서의 합당성이라는 표제 하에 묶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합당성을 갖춘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통해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이기도 하다. 롤즈에 따르면 정의의 두 원칙 자체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덕들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첫째,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적 협동의 기초를 손상시키는 극렬한 정치적 이슈들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며, 둘째로 자유로운 공적 이성의 합당하게 명료한 기초를 닦아주고, 셋째로 질서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들과 사회의 기본구조 안에서 그것들이 실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으로서의 시민들이 공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이상을 공지성의 조건을 통해 개념화한다.⁴²⁾ 특히 세 번째는 질서정연한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정의감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TJR, 397-405쪽 참조).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형성적 정치(a formative politics), 즉 자기 통치에 필요한 성품들을 시민들 안에 길러내는 정치를 요구한다”⁴³⁾ 라는 샌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자유관을 수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4. 결론

본 논문은 롤즈의 자유 개념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살펴보고, 전자에 기초해 있으면서 ‘개인이 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는 무엇인가’를 근본물음으로 삼

42) 위의 책, 116-117쪽.

43) M.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6쪽.

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론에서는 ‘시민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의 상태는 무엇인가’를 근본물음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의적 지배, 즉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대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이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계기들—법의 지배, 시민적 덕성, 시민들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을 자유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내포하고 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소극적 자유와 이에 기초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 관념들 또한 이미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규율체계의 속성으로서의 공정성, 그리고 개인의 덕목으로서의 합리성은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개념을 함축하고 있었으며, 공화주의적인 법의 지배, 차등의 원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비롯한 시민적 덕성들은 이미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공화주의적 관념들이었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롤즈의 자유 개념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도서출판 길, 2011.
- 황경식,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자유와 소유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열린 자유주의를 위하여』, 철학과현실사, 2006.
-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 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Liberty*, H. Hardy(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Bowles, 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 Constant, B., *Principles of Politics Applicable to All Governments*, trans. D. O’Keeffe,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Hobbes, T., *Leviathan*, E. Curley(ed.),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4.
-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Inc., 1974.
- Pettit, P., “Liberty as Non-domination”, *Republica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7.
- _____, “Republican Freedom: Three Axioms, Four Theorems”,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C. Laborde & J. Maynor(eds.), Malden/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8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2.
- _____, “Justice as Fairness”, *John Rawls Collected Papers*, S. Freeman(ed.),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1999,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옮김, 서광사, 1991.
- _____,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 Kelly(ed.),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Rousseau, J., *Des Lois*, in: *Oeuvres complètes*, vol. 3, B. Gagnebin & M. Raymond(eds.), Paris: Gallimard, 1964.
- Sandel, M. J.,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Skinner, Q.,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Tocqueville, A., *Democracy in America*, Trans. G. Lawrence, New York: Harper & Row, 1969.